#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포항시장 (2023. 11. 3.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6일

다. 상정일자

- 제31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 -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(2023. 11. 14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개정이유

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의2)
 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## 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최상용)

-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 하는 것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
  - 안 제4조의2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.
- 종합검토 결과,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「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6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- 7. 토론의 요지 : 없 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